

안산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173
----------	------

제출년월일 : 2003. . .
제 출 자 : 안 산 시 장

□ 제안이유

- 안산시물품관리조례 제10조에서 규정하는 “관서당경비”라는 용어가 과거에는 예산과목에 규정되었으나 현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시달하는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에 의해 편성된 예산서에는 “관서당경비”라는 예산과목이 없으며, 각 부서에서 집행되는 일반운영비가 과거의 관서당경비의 성격이므로 조례상 규정한 용어와 예산서의 용어를 일치시켜 예산집행에 혼선을 예방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관서당경비에 의한 물품매입을 일반운영비에 의한 물품매입으로 변경 조정함
(안 제10조제1항)

□ 개정조례안 : 별 첨

□ 관계법령 발췌서 : 별 첨

- 안산시물품관리조례 제10조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 사전(입법)예고 : 해당없음

□ 기타참고사항 : 해당없음

안산시 물품관리조례 개정조례안

안산시 물품관리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제목 “관서당경비에 의한 물품매입”을 “일반운영비에 의한 물품매입”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관서당경비”를 “일반운영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		회계과
입 안 자	실·과장 직위·성명	회계과장 이 범 영
	담당·팀장 직위·성명	계약관리담당 김태호
	담당자 성명·전화	서봉석 (행정 3079)

신·구조문대비 표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 (<u>광서당경비</u>에 의한 물품매입) ①판 서당경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한다.</p> <p>② ~ ③ (생략)</p>	<p>제10조 (<u>일반운영비</u>) ①일 <u>반운영비</u> ② ~ ③ (현행과 같음)</p>

안산시민간감시단구성및운영조례안

의안 번호	1175
----------	------

제출년월일 : . . .
제 출 자 : 안 산 시 장

□ 제안이유

- 불법행위의 예방과 감시를 위하여 현재 각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환경, 수질, 도로감시단등 민간감시단 구성과 운영의 근거를 확보하여 감시단 운영의 원활을 기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민간감시단의 주요기능을 정함(안 제2조).

나.민간감시단은 안산시 거주자중 해당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력이 있는 자로 위촉토록 하고 분야별 실무부서에서 따로 민간감시단을 구성토록 규정함(안 제4조).

다.민간감시단의 활동결과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함(안 제6조).

라.민간감시단 활동에 참여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 제정조례안 :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 해당없음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 사전예고(결과) : 의견없음

- 입법예고 : 2003. 9. 15 ~ 9. 25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없음

안산시민간감시단구성및운영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민간감시단(이하 “민간감시단”이라 한다)의 구성과 이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민간감시단이라 함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불법행위를 감시하고 생활주변의 주민 불편사항 등을 관찰 제보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 (기능) 민간감시단은 다음 각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환경(대기, 수질, 폐기물 등) 오염행위 감시와 예방활동
2. 도로, 하천, 공원내 불법행위, 재해위험요인 감시와 예방활동
3. 불법 유동광고물 감시와 예방활동
4. 기타 시장이 불법행위의 감시와 예방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 (구성) ①민간감시단은 안산시에 거주하는 주민중에서 해당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시장이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할 경우 재위촉할 수 있다.

②시장은 민간감시단이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③민간감시단은 제3조 각호에 해당하는 업무분야별로 따로 구성할 수 있다.

제5조 (운영) 민간감시단은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제3조 각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운영한다.

제6조 (보고) 민간감시단은 활동결과를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민간감시단의 제보 및 의견을 업무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실비보상등) 민간감시단 활동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민간감시단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		기획예산과
임	실·과장 직위·성명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안	담당·팀장 직위·성명	기획담당 김남림
자	담당자 성명·전화	이현옥 (행정 2802)